

【별지 제12호서식】

체 계 개 발 기 본 계 획 서

(일반 무기체계 및 전장관리정보체계)

1. 탐색개발결과

※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삭제

2. 사업추진방법

가. 사업추진방법 변경내용

나. 사업의 투자형태

다. 연구개발주관기관

라. 연구개발일정 및 소요예산

마. 체계구성, 체계분야별 개발계획(소프트웨어 포함)

바.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확보방안(일괄 또는 분리발주)

사. 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 여부

3.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계획

(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인력유지계획을 포함)

4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시험평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

가. 시험평가대상체계

나. 시험평가계획 요약

다.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개요

라. 시험평가자원 및 군지원사항

5.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 계획(평가일정, 평가절차, 핵심기술요소, 목표수준 등)

※ 기술성숙도평가 계획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

6. 업체 선정기준·방법 및 계획(평가항목·기준, 평가절차, 평가일정, 평가결과 공개여부, 계약·협약 방법 등)

7. 체계개발단계 M&S 활용계획(필요시)

8. 연동대상체계 및 상세정보 교환 목록, 주파수 특성자료, 정보보호 대책 등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
9. 시제품 활용계획(시제품이 생산된 경우 부품 단위의 재활용 계획 포함)
10.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 검토결과
11. 그 밖에 전력화지원요소의 개발 및 확보방안[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적용방안 포함] 등
12. 영 제61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 사항
13. 체계개발단계에서 수행할 패키지시설의 설계 및 공사 추진계획
14. 전문인력 활용계획/감리수행 계획(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경우)
 - 목적, 대상사업, 사업비, 사업기간, 발주시기, 실시방안(범위, 형태, 감리원의 요건, 감리 횟수 및 시점), 소요예산, 계약방법, 계약기관, 추진일정,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15. 개발간 부품 국산화 병행 추진계획
16. 체계부품국산화 대상품목 검토결과
17. (체계개발단계와 양산단계 통합 수행시) 양산계획
 - 가. 양산물량, 전력화시기, 연도별 물량배분, 총사업비, 연도별 편성예산
 - 나. 양산추진일정
 - 다. 야전운용시험·전력화평가계획
 - 라.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연구인력유지 및 예산의 확보계획
 - 마. 품질보증계획 등

상세설계 및 선도합건조기본계획서

1. 사업추진방법

- 투자형태, 연구개발주관기관, 획득방안, (필요시)복수연구개발 추진여부
※ 사업추진기본전략과 통합수립시 생략

2. 체계개발 계획

- 체계구성, 분야별 개발계획,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보계획, 품질관리계획 등

3. 시험평가 개략계획

- 시험평가 대상 및 수량,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개요, 시험평가 자원 및
군 지원 필요사항

4.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 계획

- 평가일정, 평가절차, 핵심기술요소, 목표수준 등

5. 상호운용성 확보계획

- 연동대상체계 및 상세정보 교환 목록, 주과수 특성자료, 정보보호 대책 등

6. 함정탑재 장비, 무기체계 및 특수성능(수중방사소음 등) 확보계획 (함정 및 함정에 탑재하는 연구개발 체계에 대한 체계통합계획 및 체계통합협의체 운영계획 포함)

7. 함정 기본설계, 상세설계·선도합 건조계획 및 해외협력사항 등

8. 업체선정 계획

- 선정기준 및 방법(평가항목·기준, 평가절차, 평가일정, 평가결과공개여부,
계약·협약 방법)

9.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및 확보방안(성과기반군수지원 우선 적용 검토 내용 포함)

10.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 검토결과

11.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확정되지 않은 함정 탑재장비의 관급 분류에 관한 사항

12.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운영계획

- ※ 사업추진기본전략과 통합수립시 생략하되, 분리작성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이후
변경된 경우에만 작성

13. 체계부품국산화 대상품목 검토결과